

### 3

## 생활안전부

### 가. 중점과제

- 기본생활 실천
- 학교폭력예방,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 안전사고 예방
- 보건위생

### 나. 중점과제 추진 계획

#### 1) 기본생활 실천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일정
교내·외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 생활지도 관련 규정 보완 및 개정</li><li>•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 수립</li><li>• 등·하교 지도, 실내 질서 지도, 복도 순회지도</li><li>• 신입생 교내·외 생활 교육(오리엔테이션)</li><li>• 졸업식(종업식) 전후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li></ul>	연중 4월 연중 2월 2월
기본 생활 습관 실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복학생, 전입생 적응 지도</li><li>• 식사 질서 지도, 교외 생활 지도</li><li>• 절약 및 환경 보존 생활 습관 교육, 지도, 분실물 코너 설치 운영</li><li>• 학생도박예방교육</li><li>•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 운영</li></ul>	연중 연중 연중 9월 10월 2주
상·벌점 관리 시상 및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운영</li><li>• 상·벌점 관리</li><li>• 모범학생표창</li><li>• 교내 징계 프로그램 운영</li><li>• 성찰실 운영</li></ul>	연중 연중 학기별 연중 연중

#### 2) 학교폭력예방,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일정
학교폭력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li> <li>• 학교(성)폭력, 가정폭력,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li> <li>•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예방 교육</li> <li>•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및 결과지도</li> <li>• 학교 폭력 신고 체계 구축 및 결과 처리</li> <li>•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주간</li> <li>•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주간</li> <li>• 성폭력 추방 주간</li> </ul>	3월, 연중 연중 3월, 6월, 9월, 12월 5월, 10월 연중 3월 2주, 9월 2주 6월 3주 11월 둘째주
체벌 없는 학교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li> <li>• 체벌 고충 처리 (신고전화 설치, 홈페이지 및 소리함을 통한 신고 접수)</li> <li>• 체벌 관리 규정 보완 및 개정</li> </ul>	5, 7, 9, 11월 연중 연중

[붙임 1] 상벌점 제도의 효율적 운영

## 가. 목적

- 1) 일관된 방법으로 지도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상호존중 한다.
- 2) 학교 규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한다.

## 나. 방법

- 1) 전 교사가 상·벌점을 입력하고,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한다.
- 2) 누적 점수가 징계 기준에 해당이 될 때에는 생활안전부 학년 지도교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처리 한다.
- 3) 상·벌점은 1년간 유효하며, 익년에는 소멸된다.
- 4) 벌점은 상점에 의해 동일한 점수가 상쇄된다.
- 5) 벌점은 1년간 누계되고, 벌점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되며, 징계가 종료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 단, 상점에 의해 상쇄된다.
- 6) 시상된 상점은 소멸된다.

## 다. 상·벌점 기준 및 시상·징계 기준

### (1) 상점 기준 및 시상 기준

#### ① 상점 기준

영역	번호	상점 내용	점수	비고
학급 · 교내 생활	1	환경보존이나 미화, 에너지 절약 등에서 모범이 됨	2	
	2	학습 또는 진로 탐색 활동에서 모범이 됨	2	
	3	교사 또는 급우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함	2	
	집단	체육대회 등 학급 단위 행사에서 우수 학급으로 선정됨	2	

예절	5	교사 또는 교우를 대하는 태도가 예의 바름	2	
수업태도	6	수업에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함.	2	
	7	수업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줌.	3	
규정 준수	8	학교 규정(용의 복장, 두발 규정 등)을 잘 준수함.	2	
신고	9	갈취, 절취, 학교 폭력을 신고함	2	
	10	분실물, 급식 도식 행위, 흡연, 음주 등을 신고함.	2	
교외 생활	11	외부(지역주민, 언론 보도 등)로부터 칭찬을 받음	10	
기타	12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중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심의 결정

## ② 시상 기준

상점		표창 구분	비고
개인	20	외부 상(모범상) 우선추천	수시
	25	학교장 표창	1학기 말
	40		2학기 말

※ 상점으로 인한 모범학생상 표창은 1회만 수상 할 수 있다.

※ 별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점과 관계없이 모범학생상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점으로 인한 모범학생상 표창은 1회만 수상 할 수 있다.

## (2) 별점 기준 및 징계 기준

### ① 별점 기준

영역	번호	세부내용	별점	비고
예절	1	학우에게 지나치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	2	
	2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	5	
	3	언행이 불량하여 외부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0	★
	4	교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30~50	심의 결정
준법 / 질서	5	넥타이 미착용이나 교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	
	6	휴식 및 점심시간에 교실,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1	
	7	급식 시 새치기나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2	
	8	지정된 교복(동복, 춘추복, 하복 구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2	

	9	일과 중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2		
	10	노출된 형식의 목걸이와 신체를 이용한 피어싱을 하는 행위	2		
	11	두발규정을 위반한 경우(염색 등)	3		
	12	슬리퍼를 신고 등, 하교를 하는 경우	3		
	13	급식 시 도식(盜食)을 하는 경우	5		
	14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등, 하교를 하는 경우	5		
	15	학생 출입이 제한된 교내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5		
	16	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5		
	17	일과 중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3		
	18	휴교 일에 근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학교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5		
	19	문신을 하는 경우	10		
	20	일과 중 무단외출을 하는 경우	10	★	
	2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10	★	
	22	학교 출입 시 월장을 하는 경우	10	★	
	23	공공문서(인장, 제 증명 포함)를 위조, 변조, 대여한 경우	10	★	
	24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연류 되었다가 훈.석방된 경우	10	★	
	25	징계지도를 불응하는 경우	10	★	
	26	불법으로 서클을 조직, 운영하거나 가입 하는 경우	10	★	
	2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되어 구속된 경우	20	★	
	2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20	★	
	시설 훼손	29	품행이 극도로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0	심의결정
		30	지나친 장난으로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5	변상조치
		31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5	변상조치
		32	책, 결상, 사물함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10	★변상조치
		33	교내 공공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10	★변상조치
	수업	34	수업교재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2	
		35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	2	
		36	수업 중 엎드려 있거나 수면하는 경우(2차)	2	
37		수업 시간 중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3		
38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	3		
39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3		
40		수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책이나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3		
41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3		
42		수업 분위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5~	성찰교실 입실조치 /심의결정	
시험	43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	★/심의 결정	
	44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경우	10	★/해당 과목 0점	

	45	금지된 물품(휴대폰, 전자기기등)을 소지하는 경우	10	★/해당 과목 0점
	46	다른 학생을 강제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0~50	해당과목 0점/ 심의 결정
	47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탐지하였거나 절취한 경우	30~50	해당과목 0점/ 심의 결정
근태	48	미인정 지각	1	
	49	미인정 결과, 조퇴	2	
	50	미인정 결석	3	
	51	악의적 지각, 조퇴, 결과, 결석	5	
약물	52	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등을 소지한 경우	5	
	53	술을 소지한 경우	10	★
	54	흡연을 한 경우	10	★
	55	음주를 한 경우	20	★
	56	환각성 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20	★
	57	환각성 약물을 복용한 경우	20	★
환경 보존	58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1	
	59	껌이나 침을 뱉는 경우	1	
	60	책, 결상이나 사물함 또는 기타 시설에 낙서를 하는 경우	2	
	61	화장실 휴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경우	2	
	62	공공 게시물을 훼손하는 경우	2	
퇴폐 행위	63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2	
	64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3	
	65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6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5	
금품	67	금품 절.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68	금품 절.갈취 행위에 동조한 경우	20	
	69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20	
	70	금품을 갈취한 경우	30	★
	71	금품을 절취한 경우	30	★
	72	공금을 유용한 경우	30	★
집단	73	불법 집회에 참여한 경우	10	★
	74	학생을 선동하여 불법 집회를 연 경우	20	★
정보 통신 윤리	75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10	★ 심의 결정
	76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10	★ 심의

	사용하는 행위	}	결정
77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10 }	★ 심의 결정
78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학생 간의 대화 등)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10 }	★ 심의 결정
기타	79		상의 결정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중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② 징계 기준

별 점	징계 구분	비 고
10	학교 내 봉사	3일 이내/출석 인정
20	사회봉사	5일 이내/출석 인정
30	특별교육 이수	5일 이내/출석 인정
40	출석정지 5일	가정학습/무단결석 처리
50	퇴학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붙임 2] 교육생활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에게 수업 방해 금지, 자리 이동 금지 등 주의를 준 후 실시</li> <li>• 자기 책상과 의자를 복도로 옮겨 성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li> </ul>	수업 참여,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li> <li>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li> </ol>	성찰실 또는 교감실 또는 교감이 지정된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li> <li>• 해당 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li> <li>•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li> </ul>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시간 활용 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li> </ul>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li> <li>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li> </ol>	성찰실 또는 교감실 또는 교감이 지정된 장소 (60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li> </ul>	

- ※ 학교별 지정 장소는 교장(감)실, 교무실, 성찰교실, 학교 내 유휴교실 등 사안의 경중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지정
- ※ 학생보호인력은 교직원, 학습지원튜터, 교육활동보조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 학교 여건과 교직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 학교별 지정 장소에서의 분리 학생 지도 방법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 지각의 기준은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 성찰 과제는 행동 성찰문(〈서식 4〉), 교과서 요약, 학습 용어 정리 등 지도교원이 상황에 맞게 제시
- ※ 관련 학생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별 생활교육 절차에 따라 진행
- ※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 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3) 안전사고 예방

● 추진 과제 및 운영 계획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일정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교육 7대 영역 교육</li> <li>• 안전사고 예방 계도</li> <li>• 교내 시설 정기 안전 점검</li> <li>• 교통안전 지도</li> <li>• 학교 안전 점검의 날 운영</li> <li>• 교내, 교외 안전 지도</li> </ul>	연중 연중 연중 연중 매월 4일 연중
재난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훈련(합동1회, 합동1회), 지진대피훈련</li> <li>• 민방위 대피 훈련</li> </ul>	4월, 5월, 6월, 9월,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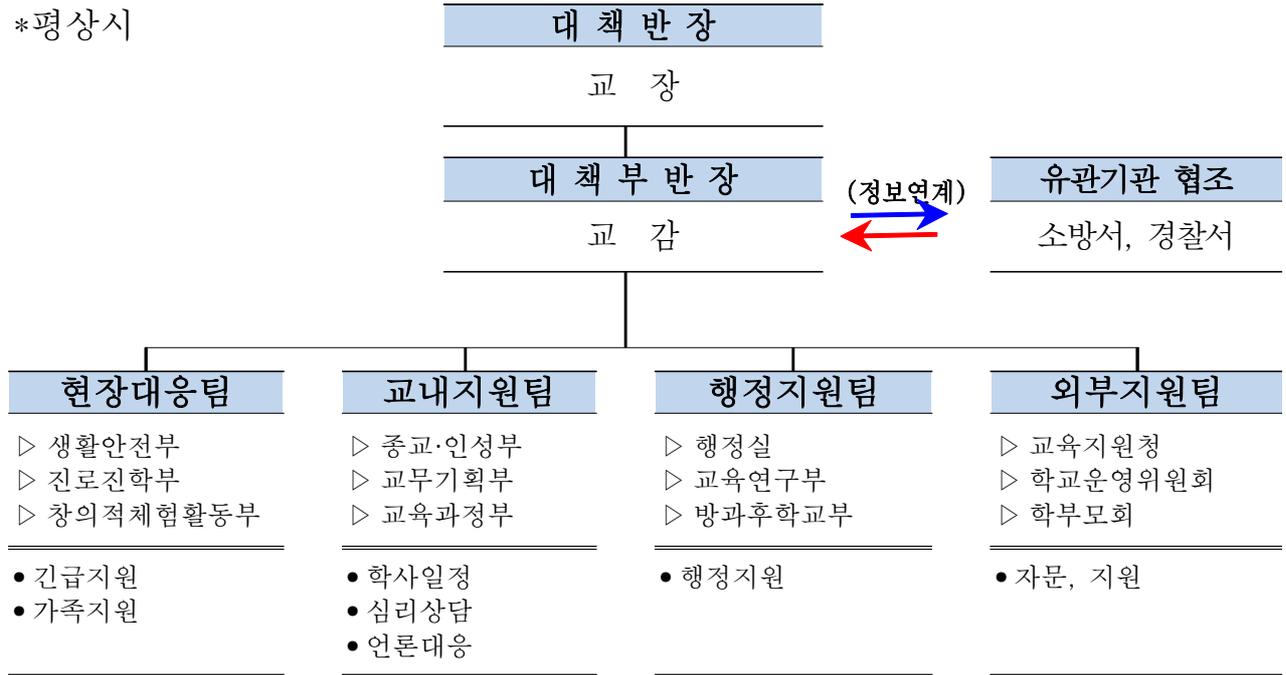
● 안전교육 7대 영역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감염병)
교육 내용 고등학교	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작업장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5. 코로나-19 등교수업 생활수칙		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5. 코로나19 바로알기
			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 학대 포함)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교육 시간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교육 방법	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3.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붙임 1] 학교 안전 관리 조직 운영

【 학교 안전 관리 추진 조직도 】

\*평상시



\*비상시

현장대응팀	교내지원팀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li> <li>- 보호자 연락</li> <li>-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수집(현장방문)</li> <li>- 일지 작성</li> <li>- 사안보고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li> <li>- 직원회의 개최</li> <li>- 학생현황 파악</li> <li>- 학사일정 검토</li> <li>- 관련 문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귀교 대책 수립</li> <li>-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li> <li>- 피해현황 파악</li> <li>-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협조체계 구축</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li> <li>-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li> <li>- 학생 관리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지원 요청</li> <li>- 긴급상황시 문자메시지 발송</li> <li>- 가정통신문 발송</li> <li>-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li> <li>- 상담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사고위험 여부 확인</li> <li>- 행·재정 지원대책 마련</li> </ul>

## [붙임 2] ‘학교 안전지킴이’ 구성 및 역할

조직부서	구성원	역할
생활안전지킴이	행정실장, 소방관, 교사, 학부모,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자원봉사자, 기타설비점검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전기, 소방시설 점검</li> <li>- 학교 체육시설 점검</li> <li>- 휴식(점심)시간 생활점검</li> </ul>
급식안전지킴이	영양교사, 학부모(급식 모니터링회),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자재 점검</li> <li>- 급식실 위생 점검</li> <li>- 급식 식자재 업체 점검</li> </ul>
교통안전지킴이	경찰관, 모범운전자,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하교시 교통 지도</li> <li>- 교통안전 예방 지도</li> <li>- 등하교길 보행 안내</li> <li>- 학교 주변 교통위험 시설 점검</li> </ul>
유해환경지킴이	학부모, 생활지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주변 유해물 점검</li> <li>- 학교 주변 유해업소 계도 및 고발</li> </ul>
폭력예방지킴이	학부모, 전담경찰관, 교사,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수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내외 우범 장소 순찰</li> <li>- 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li> <li>- 폭력학생 선도</li> </ul>

### 4) 보건 위생

#### ● 목적

- 1)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유지·증진해 나가는 삶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 2) 체계적인 건강증진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 ● 기대효과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기 건강문제 해결능력 배양.

#### ● 보건교육과정운영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일정
보건,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건강기록부 정리 및 건강상담</li> <li>• 건강실태 파악 및 요 보호자 관리, 사랑의 헌혈</li> <li>• 학생 건강 검진</li> <li>• 교직원 건강 검사</li> <li>• 금연 교육 및 약물 오남용 교육</li> <li>• 단체 급식, 매점 위생 관리</li> </ul>	연중 학기별 8월 9월 연중 연중
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예방 교육</li> <li>• 양성평등교육</li> </ul>	

## [붙임] 보건교육과정 운영

### (1) 내용체계

영역	차시	제목	관련주제
질병예방과 관리	1	감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과 관리
약물 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2	흡연의 영향 및 금연의 이득	흡연의 피해와 금연의 이득
	3	누구를 위하여 술을 마시나? 술의 두 얼굴	음주의 폐해와 절주의 이득
	4	약물 오남용, 마약교육	약물사용에 관한 바른 이해
중독예방	5	인터넷스마트폰중독, 학생도박	도박, 중독예방
성과 건강	6	성이란 무엇인가? (디지털성예방)	성의 개념(디지털성예방)
	7	건강한 성(사랑과 책임)	사랑과 책임
	8	에이즈와 성(性)인성 질환	성(性)인성 질환
	9	일그러진 성	성폭력, 성매매
	10	양성평등교육	평등한 성의식
생활습관관리	11	비만관리	비만의 문제
	12	구강관리	구강의 문제
정신건강	13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대처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14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응급처치
	15	빠를수록 좋은 응급처치	응급처치
	16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17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 (2) 수업 계획

- ① 대상: 전 학년
- ② 교육과정 진행: 보건, 창체, 교과로 나누어 17차시 진행

### (3) 운영 방침

- ① 가능한 한 학습자가 조사, 관찰, 실습, 발표, 토론, 견학 등 직접 체험 활동을 적극적이고 능

동적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 ② 소집단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 활동에서 얻기 어려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 ③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협동적으로 참여하여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이 되도록 한다.
- ④ 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 ⑤ 창의적 경험의 기회를 많이 경험하도록 하고, 광범위한 자료와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 ⑥ 교과, 특별 활동과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⑦ 보건수업 중 발생하는 응급환자는 교내 응급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한다.

## (4) 성교육

### 가) 목적

- 학생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 및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도모
- 디지털 성 예방 및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증진
- 더불어 행복하고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나) 성교육과정 15차시 구성

보건, 교과, 창체 시간 15차시 구성

구분	제목	관련주제
1	생명존중교육	인간존중
2	인터넷, 스마트폰교육, 인터넷 성	개인과 공동체안전
3	양성평등교육 1	평등한성의식
4	양성평등교육 2	평등한 성의식
5	성폭력예방교육 일그러진 성	개인과공동체안전
6	성폭력예방교육 일그러진 성	개인과공동체안전
7	성폭력 일그러진 성	개인과공동체안전
8	성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성 예방	성의 개념(디지털성예방)
9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한 성
10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관계
11	건강한 성의식, 성태도	건강한 성가치관
12	건강한 의사결정	건강한 의사결정
13	사회와 성문화	사회와성문화
14	건강한 성, 에이즈와 성질환	건강한 성
15	건강한 성, 에이즈와 성질환	건강한 성

## 5) 위클래스(Wee class)

### ● 개념

위(Wee) = 'We(우리들) + education(교육)',

'We(우리들) + emotion(감성)'의 이니셜

- ④ 의미 :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위(Wee) 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도록 지원
- ④ 대상 :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주 대상은 위기학생
- ④ 체계 : 단위학교(Wee클래스)-교육(지원)청(Wee센터)-지역사회 연계된 다중 안전망

### ● 목적

-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예방·회복·발달적 차원의 학교상담 지원
- 학생의 성장·발달 촉진을 위한 상담 제공
- 사회적 지지자의 역할을 통한 학생의 학교 적응력 강화와 위기 학생 및 부적응 학생 감소

### ● 방침

-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함.
- 외부 상담 연계 시 담임, 생활안전부 협조와 학부모 동의 후 실시함.

### ● 세부 추진 계획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일정	담당자
상담 및 치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학부모 개인상담(내방, 전화, 사이버) 및 집단상담, 교사 자문</li> <li>• 정서행동특성검사 진행, 상담 및 추수 연계</li> <li>• 인터넷-스마트폰 진단조사 실시 및 추수상담</li> <li>• 학업중단예방 숙려상담 진행</li> <li>• 개인 및 집단 표준화 검사 실시</li> <li>• 교육청 및 비영리기관 협력, 연계</li> <li>• 학생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li> </ul>	연중	박지혜
교육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학생, 학부모, 교직원)</li> <li>•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선도위원회 조치에 의한 상담 진행</li> <li>• 교원연수지원 및 자문</li> <li>• 위기지원협의체(생명존중위원회)구성 및 운영</li> </ul>	연중	박지혜

### ● 기대 효과

- 위(Wee)클래스 상담·치유 지원 활동 활성화
- 학생 상담·치유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 예방
-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회복 지원을 통한 교육 강화

##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 I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 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 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 II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절대 학부모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거나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 생활교육부장 교사, 상담 선생님께 사실을 알려주세요.

만약, 학교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면 117로 신고하세요.

### III 학교폭력,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IV 학교폭력 관련 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긴급전화(☎1588-7179),

서울Wee센터(☎399-9505), 성북강북Wee센터(☎917-7887), 동부Wee센터(☎2233-7883)

서부Wee센터(☎390-5585), 강동송파Wee센터(☎3431-7887), 남부Wee센터(☎2677-7887)

#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안내

## 1 개념

-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7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 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비교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자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보호자	제한 없음
피해자	아동(18세 미만)	아동(18세 미만)	학생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내 부모와 보호자에 행해지고 있으나 **교사(보호자에 해당)의 체벌이나 성희롱, 성추행도 아동학대 신고 및 처벌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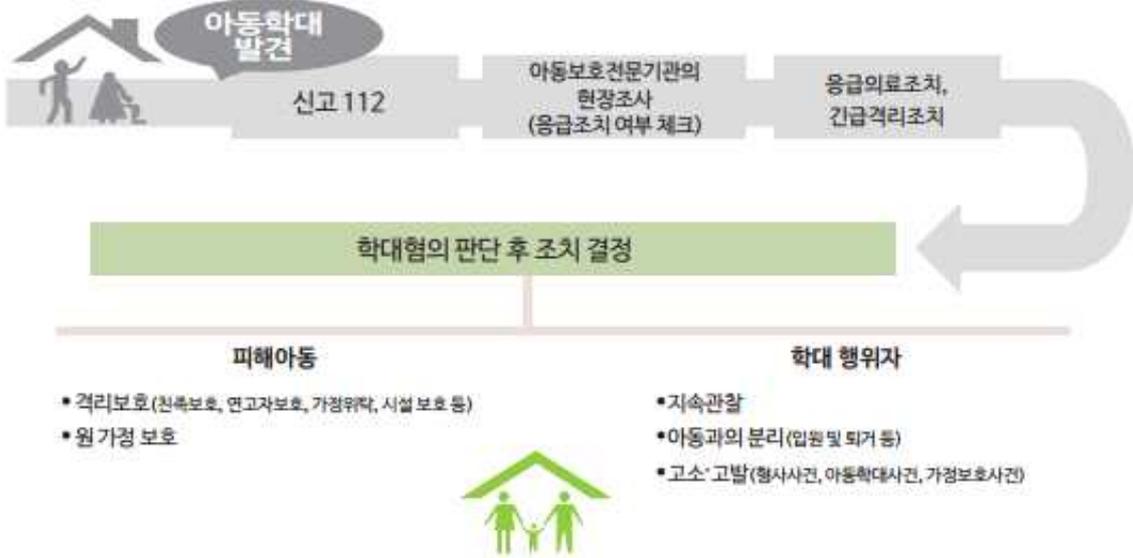
## 2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과태료

구분	아동학대 신고	가정폭력 신고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신고방법	국번없이 112	1577-1391, 위기 상황 시 112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의무 및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 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li> <li>○(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해 보장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시신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함</li> <li>○(비밀누설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해서는 안 됨</li> <li>○(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li> </ul>



# 아동학대 대응 및 사안처리 절차

출처 : 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 아동학대 신고: ☎ 112

### 현장조사 및 조치결정 단계

◆ 사법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교 협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혐의 판단</li> <li>피해아동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아동 응급조치 집행</li> <li>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li> <li>보조인 및 후견인 선임 등</li> </ul> </li> <li>학대행위자 임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임시조치 신청</li> <li>고소 고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조사 및 증거 수집 협조</li> <li>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 보호</li> <li>비밀 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아동에 대한 비밀 엄수</li> <li>신고자에 대한 비밀 엄수 및 보호 등</li> </ul> </li> <li>피해학생의 학적 처리 협조 (출석인정, 비밀전학, 임시전학, 위탁교육 등)</li> </ul>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단계

◆ 사법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교 협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아동 : 상담, 의료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li> <li>학대행위자 : 보호처분, 결과 상담, 심리치료, 가정지원 등</li> <li>사후관리 연계기관 결정 및 서비스제공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 보호, 심리치료 등 협조체계 유지</li> <li>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엄수</li> </ul>

# 인권 관련 교육

##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체벌 등 일체의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강화

## 통합적 관점에서 폭력과 관련된 매뉴얼 정비

- 학교 내 폭력(학생 간 폭력, 교직원에 의한 학생 폭력,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온라인 보급과 현장 접근성, 활용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비
- 학교에서 '폭력'의 범주에서 관련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체벌, 언어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사안별, 대상별 지침 마련

##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 연구·개발

-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근로학생, 빈곤학생, 학생선수,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관련 차별 인식 현황 파악
- 인권 친화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소수자 학생 차별 예방 및 지원

-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청 차원의 상담지원시스템 마련
- 소수자 학생 차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서울교육 정책 수립

## 사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마련

- 사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마련 및 사례 배포
  - 전자기기 사용, 소지품 검사 및 압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사생활 보호 인식 제고
  - 사생활 보호 및 존중 사례집 개발 및 보급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 및 교육

-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
- 개인정보 보호 직무연수
  - 학교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학교장) 및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안 연수

## 학생,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 참석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

# 도박 예방교육

## ☐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무엇이고, 하는 횟수는?

도박종류	2020	2021
	비율(%)	비율(%)
스포츠도박	44.1	32.6
카지노*	11.7	25.9
사다리게임	20.0	13.0
카드	2.4	4.6
주식	0.0	1.3
화투	0.0	0.4
성인모락	0.3	0.0
기타**	20.0	21.8
합계	100	100



\*불법 소셜 카지노, 카지노를 차용한 게임  
\*\*기타 - 확률경 마이템, 그제크, 파워볼, 대리배팅, 야리오, fx시  
실시간 홀백, 미니게임, 가상축구, 하이로우, 모바일게임, 바카라



2021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이용한 청소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2020년도는 **스포츠 도박 > 사다리게임 > 카지노**에서 2021년도는 **스포츠 도박 > 카지노 > 사다리게임**으로, 청소년들이 카지노(포커, 홀덤, 바카라 등)를 하는 비율이 높아졌음.

2021년 매주 3회 이상 하는 비율이 58.6%로 높게 나타남.

## ☐ 청소년이 도박을 시작한 연령과 잃은 금액은?

**본격적으로 도박을 시작한 연령은 15~17세**  
세부적으로 도박을 시작한 추정 연령을 살펴보면, 17세 26.5%, 16세 23.6%, 15세 20.23% 순으로 중2~고1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도박으로 잃은 금액(천원)	비율(%)
100만미만	8.8
100만이상-500만미만	21.2
500만이상-1,000만미만	10.8
1,000만이상-3,000만미만	15.6
3,000만이상-5,000만미만	6.1
5,000만이상-1억미만	3.3
1억 이상	2.0
합계	100

\*무응답(32.3%)



청소년 도박 시작 시기는 15-17세이며, 또한, 도박을 시작하고 1년 이상 도박을 유지 하는 경우가 나타나, 어린 시절에 **도박을 본격적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 길로** 확인됨.

도박으로 잃은 돈의 평균 액수가 2020년 1,208만원에서 2021년 1,344만원으로 증가되었음.

## ☐ 여기서 잠깐, 학부모님 도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도박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갑자기 친구들과 돈 거래가 잦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선물 등)을 자주 사 주고,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는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 가정 내에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 ☐ 만약 우리 아이들이 도박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도박을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도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판사의 명령 형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1호~10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 내용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 도박문제 예방에 도움 되는 영상 시청하기



대기업 다니던 명문대생이 도박하면 벌어지는 일들



아이들은 어쩌다 도박에 빠지게 된 걸까?



도박은 질병이다



☐ 우리 자녀가 도박문제 있는지 걱정된다면?

○ 도박문제가 의심된다면, 아이와 함께 도박문제 선별검사를 먼저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검사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www.kcgp.or.kr)'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도박문제 예방상식 안내서"를 통해, 자녀의 도박문제에 대해 이해가 필요해요

☞ 도박문제 예방상식 안내서 다운로드



-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 시길 바랍니다.

☞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문의하세요. 아래 4개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문자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챗봇

